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413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9.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소3215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5,502원 및 그중 2,272,946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5,502원 및 그중 2,272,946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5.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티볼리 승용차를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60개월, 월 대여료 401,100원, 운용렌트(만기 선택형), 추정잔존가치 차량금액의 27%(6,175,000원), 보증금 차량금액의 20%(4,574,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내용의 장기 렌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5. 13. 소외 회사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즈음 원고에게 보증금 4,574,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8.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서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운용렌트일 경우 장기렌탈 약관 제1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렌탈 약관 제13조 제1항은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계약기간이 55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이고 이용기간이 만 15개월 이상 만 18개월 미만일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율을 35%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1. 11. 11.경 소외 회사의 렌탈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였는데,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미납금은 6,854,066원[= 미납 렌트료 947,301원(= 연체 렌트료 802,200원 + 경과 렌트료 145,101원) + 중도반납수수료 5,899,645원(= 잔여 렌트료 16,856,099원 × 35%, 원 미만 반올림) + 연체료 7,120원]이었다.

바. 원고가 위 미납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2022. 2. 9.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 렌트료는 2,272,946원, 연체료는 62,556원으로, 소외 회사의 미납금채무 합계액은 2,335,5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2,335,502원 및 그중 연체료를 제외한 원금 2,272,946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 장기렌탈계약의 물적 금융 성격상 중도해지된 경우 예정되었던 자금을 운용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게는 미회수원금, 중도해지수수료, 연체리소료, 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사전에 예정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약관에서 이에 대한 산정 근거를 미리 정하여 피고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된 자동차는 고가의 물건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손해도 발생하게 되어 원고가 이를 전보할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는 신차 매수 후 운행 개시 시점에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자를 물색하는 동안 자금 운용 이익은 얻지 못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만을 부담하게 되는 점, 원고와 같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원고와 유사한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방법 및 산정률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위수현, 판사 안민주